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및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 확대〉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9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9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22.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 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및 보호자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light gray and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29조의2에 따
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
공기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
봄 지원 제공기관, 같은 법 제3
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3

2. 검토의견

가.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확대

-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는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 개정안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의 범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상 이미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근거 조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제21조제4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과 반복적·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전력이 있는 자가 종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취업제한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794개소,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527개소,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357개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2,843개소,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262개소로 파악되었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종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 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²⁾

□ 이러한 신고의무자 제도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외부에서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대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상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의 장과 종사자 등 장애인과의 접촉 가능성 또는 보호·지원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직군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각 호 생략)

- 신고의무자로 추가되는 경우, 사업주는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³⁾

<현행법상 신고의무자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 각호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은 제외한다.

-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하는 한편,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 또는 인지하게 되는 학대 피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 사실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므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25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 제공기관 현황과 서비스 수요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기간은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전력에 있는 자가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 장애인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 피해 사실의 조기 발견을 통해 신속한 조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함.

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학대 관련 취업제한기관 및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학대예방과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장애인 안전 강화와 학대 조기발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신고의무자 확대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 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절차 교육 등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학대 범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학대의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예방체계 강화가 요구됨.

특히,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지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변화된 서비스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체계를 보완하는 본 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2